

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23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14. 4. 2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국장 김 용 남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출

나. 제출내역

-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

3. 주요내용

- 기금별 조성규모

(단위:천원)

기 금 명	2013년도말 조성액 ㉠	2014년도 기금운용계획		2014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㉢-㉣-㉠
		수입㉢	지출㉣		
합 계	0	8,039,000	8,039,000	0	0
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기금	0	8,039,000	8,039,000	0	0

○ 자금운용계획

(단위: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기정액	수입액 (변경)	증 감	항 목	기정액	지출액 (변경)	증 감
합 계	8,039,000	8,039,000	0	합 계	8,039,000	8,039,000	
이자수입	39,000	39,000	0	비용자성 사업비	0	8,039,000	8,039,000
기타수입	8,000,000	8,000,000	0	예치금	8,039,000	0	-8,039,000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: 박상수)

-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㈜한국중부발전 지정 기탁금 및 예금 이자를 재원으로 조성되며,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,
- 2014.3.24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 제1차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,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업이 조건부 통과되어 예치금 전액을(8,039,000천원) 설계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,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유 재산 관리 기본계획안이 2014.4.21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
- 다만, 2015년부터 구비 등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건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<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사업비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합계	국비	시비	구비	발전소지원금
40,376	5,335	11,354	10,687	13,000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없음